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 
조례안

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008 |
|----------|------|

2022. 3. 25.(금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상욱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2년 3월 7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3월 16일

-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상욱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 정의, 적용대상 규정함. 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함. (안 제4조)
-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5조)
-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,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함. (안 제6조)
-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,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. (안 제8조)
-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9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이덕항 수석전문위원)

#### 가. 제출배경

-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으며, 보육교직원의 노동조건과 처우는 보육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.
  -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 결과(2020)<sup>1)</sup>에 따르면, 보육교사의 68.3%가 어린이집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고, 이들 중 상당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거나,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.
- 교육부 소속 교원들(유치원 포함)의 경우,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정을 통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, 시도 교육청은 교원치유센터를 지정해

1) 한국보육진흥원(2020), “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방안 모색” 토론회 자료집, p.17~18.

교원 심리상담·치료,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, 보육교직원의 경우 이러한 지원이 미흡함.

- 또한, 2021년 수립한 제4차 충청북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(2022~2026)에도 본 조례 제정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.<sup>2)</sup>
- 보육교직원이 전문가로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보육의 질 향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,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, 적용대상,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에서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의무화 하고 있고, 보육교직원의 범위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것으로 본 조항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음.

### □ 영유아보육법

제2조(정의) 5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
제4조(책임)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안 제5조에서는,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, 이는 도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

2) 제4차 충청북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(2022~2026) p.310

-주요내용: 「충청북도 보육교직원의 지위 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보육교직원이 안심하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.

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, 계획의 중복수립을 방지함.

- 현재 충청북도 중장기 보육발전 계획(2022~2026)이 수립(계획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관련 사업내용이 일부 포함됨) 되어 시행 중에 있으므로, 본 조례안에 규정된 사업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추가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.

#### 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제19조(보육계획의 내용, 수립 시기 및 절차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보육사업의 기본방향
2.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
3.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
4.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5.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,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안 제7조에서는,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자문과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되, 「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사 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방지함.
-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,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고충 및 법률상담, 심리적 안정지원, 교육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  - 시·군,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.

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보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으며, 또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은 결과적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, 영유아의 복지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·내용적으로 타당하며,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2. “피해 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지정범위를 넘어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.

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다.

**제3조(적용대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

**제4조(책무)**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.

**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**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 마다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
2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실행 계획

3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 4.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  5.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,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**제6조(실태조사)**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,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7조(위원회의 설치·운영)**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3.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「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

**제8조(지원 사업)**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
2.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
3.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
4.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
5.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

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9조(협력체계 구축)**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, 시·군,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영유아보육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유아”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2. “보육”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3. “어린이집”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
4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5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, 보육교사(대체교사를 포함한다)의 인건비, 초과보육(超過保育)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,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,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,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

## 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제19조(보육계획의 내용, 수립 시기 및 절차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보육사업의 기본방향
2.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
3.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
4.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5.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,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

1. 어린이집의 설치, 증축·개축 및 개수·보수 비용
2. 보육교사 인건비
3. 교재·교구비
4.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비
5.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
6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
7.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## 비용추계서

### 1. 비용 발생 요인

-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·홍보·상담·현장컨설팅 사업 등 추진

### 2. 비용 추계결과

#### 가. 추계의 전제

-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, 위원회 운영, 교육·홍보·현장컨설팅 사업 추진

| 연번 | 사업명             | 내역  |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
|    |                 | 지원내용  | 예산        |
| 1  |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| 5년간의 보육정책 추진 여건 분석, 과제 설정 (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 시 연계 추진)   | 45,000천원  |
| 2  | 위원회의 설치·운영      | 분기별 1회 회의(수당 100,000원×4회×14명) (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시 연계 추진)  | 5,600천원   |
| 3  | 상담전문요원          | 상담전문요원(5명)이 보육교사심리적·정서적 고충상담, 아동학대 예방관련 업무수행(기 시행중) | 139,306천원 |
| 4  | 다문화영유아 취약보육지원   | 다문화·장애아·연장 보육프로그램을 통해 보육교사 역량 강화(기 시행중)             | 10,000천원  |
| 5  | 표준보육과정 교육 및 컨설팅 | 보육과정 컨설팅, 표준보육과정 심화교육, 재무회계 인사 노무 현장 컨설팅(기 시행중)     | 10,000천원  |
| 6  | 아동학대 예방 교육      | 아동학대 의심 건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진행(기 시행중)          | 10,000천원  |
| 7  | 종사자 역량 강화       | 정부 보육정책 운영 방향 공유 및 안심보육 환경조성 등 정보교류(기 시행중)          | 20,000천원  |
| 8  | 보육교직원 연수        | 직급별 교사 역량강화교육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교육(기 시행중)           | 10,000천원  |

나. 추계 결과 : 2022년부터 향후 5년간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

### 3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##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| 1차년도<br>(2022년) | 2차년도<br>(2023년) | 3차년도<br>(2024년) | 4차년도<br>(2025년) | 5차년도<br>(2026년) | 계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세 입            | 204,906         | 209,085         | 213,390         | 217,823         | 267,390         | 1,112,594 |
| 도 비            | 204,906         | 209,085         | 213,390         | 217,823         | 267,390         | 1,112,594 |
| 세 출            | 204,906         | 209,085         | 213,390         | 217,823         | 267,390         | 1,112,594 |
|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45,000          | 45,000    |
| 위원회의 설치·운영     | 5,600           | 5,600           | 5,600           | 5,600           | 5,600           | 28,000    |
| 상담전문요원         | 139,306         | 143,485         | 147,790         | 152,223         | 156,790         | 739,594   |
| 취약보육지원         | 10,000          | 10,000          | 10,000          | 10,000          | 10,000          | 50,000    |
| 교육 및 컨설팅       | 10,000          | 10,000          | 10,000          | 10,000          | 10,000          | 50,000    |
| 아동학대 예방교육      | 10,000          | 10,000          | 10,000          | 10,000          | 10,000          | 50,000    |
| 종사자 역량강화       | 20,000          | 20,000          | 20,000          | 20,000          | 20,000          | 100,000   |
| 보육교직원 연수       | 10,000          | 10,000          | 10,000          | 10,000          | 10,000          | 50,000    |
| 지원 비용          | 0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| 0         |
| 재원 조달          | 204,906         | 209,085         | 213,390         | 217,823         | 267,390         | 1,112,594 |
| 자체 수입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| 0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지방세             | 204,906         | 209,085         | 213,390         | 217,823         | 267,390   |
|                | 세외수입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| 0         |

※ 상담전문요원은 인건비로 연도별 임금인상율은 3%로 가정